

| 이슈페이퍼 2020-08 |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이정림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4. 기대효과
- 참고문헌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이정림 연구위원

◆◆ 요약 ◆◆

-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 1명이 돌봐야 하는 만0~2세 영아는 평균 4.2명으로 나타나, 보육사 1명당 영아 2명을 돌봐야 하는 법정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아동양육시설에 온 이유를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서 질문한 결과, 영아(82.1%)와 유아(72.3%) 모두 베이비박스¹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유기 및 학대로 인한 배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적 절차 및 권한에 따른 어려움 및 개선 요구는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유아 내적 표상 검사(MSSB) 결과,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은 ‘불안’ 수준, ‘회피/위축’ 수준, ‘비조절된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MSSB 검사 결과, 일반가정에 위탁된 일부 유아의 경우 양육자와 분리에 대한 불안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육자와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어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분노 표출 행동은 없었음.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점

가. 배경 및 문제 제기

- 최근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2.19.).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인 「돌봄취약계층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이정림·최정원·최윤경(2019))」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 정부는 부모로부터 온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 이에 2019년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하나의 통합 기관 형태로 만들어서 취약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음.
-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 ◆ 이에 더하여,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 아동으로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실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을 포괄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8a: 4).
-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필요아동 및 보호조치 아동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대나 유기 등으로 인한 발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집단시설보호가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임(보건복지부, 2018c).
-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 조치 시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내입양 → 위탁가정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 등의 순으로 보호하도록 함(보건복지부, 2018a: 14).
 - ◆ 특히 2세 미만의 경우 위탁가정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보건복지부, 2018a: 14; 보건복지부, 2018b: 4).
- 우리나라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의 법적 권리가 확대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음.
 - ◆ 이후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로 전환이 강조되면서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되었음(보건복지가족부, 2009: 4; 보건복지부, 2019b: 113).
 - ◆ 2004년 새로운 보호형태로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신설되었음(보건복지가족부, 2009: 4; 보건복지부, 2019b: 113).
- 아동보호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됨. 공공전달체계는 보건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비스 제공하며, 민간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김형태·노혜련·김진석·이수천·조소연·이유진, 2017: 20).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9a)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운영 및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인건비 기준 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 등 부모의 돌봄과 양육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영유아 시기는 발달적으로 주양육자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
 - ◆ 이 시기에 건강한 사회적 유대감, 정서적 안정감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그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
- 이상과 같은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환경적인 상황 및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원가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연구의 범위

-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의 범주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아동보호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새롭게 구성함.
- 본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시설을 보호필요아동이 원가정 복귀전이나 자립이전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이나 사람으로 지칭함.
 - ◆ 이에 따라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로 범위를 설정함.

〈표 1〉 본 연구의 아동보호시설 범주

종류	본 연구에서의 포함 여부
아동양육시설	O
아동일시보호시설	O
아동보호치료시설	X
공동생활가정	O
자립지원시설	X
위탁가정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O
- 일반가정 위탁	
- 전문가정 위탁	
입양	X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아동양육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¹⁾

- 아동양육시설에서 0세부터 만6세까지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사 263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 양육실태와 요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보육사 대 영유아 비율
 - ◆ 영아를 돌보는 보육사에게는 보육사 1명이 돌보는 영아의 수, 유아를 돌보는 보육사에게는 1명이 돌보는 유아의 수,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사에게는 1명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질문한 결과는 〈표 2〉와 같음.

〈표 2〉 보육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 수

구분 (보육사 1인당 돌봄 영아 수)	단위: %(명), 명				평균
	1~2명	3~5명	6명 이상	계(수)	
전체	28.9	44.4	26.7	100.0 (90)	4.2
시설규모					
50인 미만	28.6	45.7	25.7	100.0 (35)	4.1
50인 이상	29.1	43.6	27.3	100.0 (55)	4.3
$\chi^2(df)/t$		0.042(2)			-0.2

1) 본 항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사 대상 설문 조사의 결과임.

구분 (보육사 1인당 돌봄 유아 수)	1~5명	6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71.3	28.7	100.0 (101)	4.8
시설규모				
50인 미만	77.4	22.6	100.0 (31)	4.6
50인 이상	68.6	31.4	100.0 (70)	4.9
$\chi^2(df)/t$	0.822(1)			-0.6
구분 (보육사 1인당 돌봄 영유아 수)	5명 이하	6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6.1	63.9	100.0 (72)	8.0
시설규모				
50인 미만	56.5	43.5	100.0 (23)	6.8
50인 이상	26.5	73.5	100.0 (49)	8.6
$\chi^2(df)/t$	6.103(1)*			-3.0**

주: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 ◆ 종사자 배치 현황이 만0~2세는 평균 4.2명, 만3~6세 유아는 평균 4.8명,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나, 영아의 경우에는 보육사 1명당 영아 2명을 돌봐야 하는 법정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 베이비박스를 통해 시설에 들어오는 영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많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으나, 영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돌봄을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로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과 환기가 필요함.
- ◆ 유아의 경우에는 법정 배치기준상으로는 보육사 1명이 유아 5명을 돌봐야 하는데, 6명 이상인 경우도 약 2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보육사의 경우에는 평균 8명 정도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이는 7세 이상 아동의 배치기준인 보육사 1명이 7명의 아동을 돌보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 ◆ 보육사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 대한 법정비율 기준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관한 법정비율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보호필요아동 발생원인

- ◆ 현 시설에 온 이유를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서 질문한 결과, 영아와 유아 모두 베이비 박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영아는 베이비박스가 1순위인 경우가 82.1%, 유아는 72.3%였으며,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에도 각각 87.0%,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현 시설에 온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베이비박스	82.1	87.0	72.3	78.0
베이비박스 외 유기	4.9	16.0	5.8	20.2
학대	5.6	15.4	9.2	30.6
경제적 어려움	1.2	15.4	6.9	16.2
미혼출산	5.6	12.3	2.9	11.6
이혼	-	0.6	1.7	5.2
수감	0.6	0.6	0.6	2.3
가출	-	-	0.6	0.6
계(수)	100.0(162)	147.3(162)	100.0(173)	164.7(173)

주: 본 문항은 1순위와 2순위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2순위가 없는 경우 1순위 응답만 수집하였음.

■ 이전 보호 유형

- ◆ 현 시설에 오기 전의 보호 유형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영아 유아 모두 이전 보호 시설이 없는 경우가 48.1%, 49.1% 순으로 나타나 반 수 정도는 현재 기관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남.
- ◆ 영아의 35.8%, 유아의 34.1%의 경우가 이전 보호 유형이 일시보호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일시보호시설로 먼저 배치된 후 일시보호 시설에서 보호필요아동을 각 시설로 배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표 4〉 이전 보호 유형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이전보호시설없음	48.1	56.2	49.1	57.8
일시보호시설	35.8	44.4	34.1	42.2
태양육시설	7.4	10.5	7.5	12.1
가정위탁	4.9	9.9	4.0	9.8
입양	2.5	3.1	4.0	4.6
공동생활가정(그룹홈)	0.6	2.5	1.2	4.6
기타	0.6	0.6	-	0.6
계(수)	100.0(162)	127.2(162)	100.0(173)	131.7(173)

주: 본 문항은 1순위와 2순위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2순위가 없는 경우 1순위 응답만 수집하였음.

■ 시설 거주 영유아의 사교육

- ◆ 시설거주 영유아의 사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39.5%의 영유아가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사교육비의 출처는 1순위 기준 후원금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 운영금 52.9%, 학원비 면제 14.4% 순임.
- ◆ 보육사들은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 학원 이용 영유아 유무 및 영유아 수

단위: %(명),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3명 미만	3~4명	5명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9.5	60.5	100.0 (263)	41.3	28.8	29.8	100.0 (104)	3.6
시설규모								
50인 미만	38.2	61.8	100.0 (89)	41.2	29.4	29.4	100.0 (34)	3.4
50인 이상	40.2	59.8	100.0 (174)	41.4	28.6	30.0	100.0 (70)	3.7
$\chi^2(df)/t$	0.101(1)			0.009(2)				-0.4

■ 원가정 교류

- ◆ 원가족과 교류 여부에 대해서 교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영아 89.5%, 유아 87.3%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설 거주 영유아들이 원가정과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교류하고 있는 경우(영아 10.5%, 유아 12.7%), 주 교류 대상은 영유아 모두 어머니(영아 56.5%, 유아 68.3%), 아버지(영아 29.0%, 유아 20.8%) 순으로 나타남.
- ◆ 교류빈도를 살펴보면, 영아는 한 달에 1회, 1년에 1회, 6개월에 1회 정도 순이었으며, 유아는 3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한 달에 1회 이상 순으로 나타남. 교류방식은 원가족이 아동을 방문하는 경우가 영아 88.7%, 유아 72.3%로 가장 많았음.
- ◆ 전체 영유아의 각 3.8%, 4.2% 만이 필요 시 부모와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원가정과의 교류 여부

구분	단위: %(명)		
	교류하고 있다	교류하지 않는다	계(수)
영아	10.5	89.5	100.0(590)
유아	12.7	87.3	100.0(794)

■ 아동양육시설 관련 정책 만족도 및 요구

- ◆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대체인력과 관련된 정책, 보육사의 보호자로서의 법적 권한, 아동양육시설 생활공간 기준이 순으로 나타남.
- ◆ 개선이 시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36.9%, 보육사 대 아동 비율이 16.7%, 아동양육비원지원이 14.1%, 양육시설종사자 권리보장이 7.6% 순으로 나타남.
- ◆ 지원 금액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35.4%로 다음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현황

- ◆ 보육사의 주된 근로형태는 대부분의 경우가 2조 격일(57.0%)과 2조 2교대(30.4%)임.
- ◆ 본인의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3.7%, 보통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34.2%, 매우 과중하다는 응답이 14.4% 순으로 나타남.

- ◆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육사들이 본인의 급여 수준에 보통 이상의 불만족함을 보임.
- ◆ 보육사 대 아동의 비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보육사 업무가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음.

나.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

■ 면담 참여자 특성

- ◆ 면담 참여자 36명 중, 양육시설 종사자 총 12명,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8명, 일시보호 시설 종사자 5명, 위탁가정지원센터 종사자 4명, 위탁모 7명이 면담에 참여하였음.

■ 아동보호시설 현황 및 특성

- ◆ 일시보호시설은 크게 지자체 사업으로 양육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과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 소규모 시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운영 및 기능이 상이함.
- ◆ 양육시설은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함.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 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이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위탁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양육 보조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비, 가정위탁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있으며, 이는 지역 및 위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 현황 및 특성

- ◆ 일시보호의 경우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부터 베이비박스 유기아동까지, 배치의 주된 이유가 보다 다양한 것으로 조사됨.
-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유기 및 학대로 인한 배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일반가정위탁 면담 대상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를 계기로 위탁을 시작하였으며, 모두

베이비박스를 통해 가정 외 보호 배치된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친인척 위탁 아동들은 다양한 배치 이유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남.

■ 아동보호시설의 어려움 및 개선 요구

- ◆ 가정위탁 배치에 소요되는 시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이 지적됨.
- ◆ 가정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 ◆ 체계적인 원가정 대상 교육, 지원 및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에 대한 다각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 법적 절차 및 권한에 따른 어려움 및 개선 요구는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 인력부족은 대부분의 시설이 겪고 있는 고충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다각적 처우 개선이 시급함.
- ◆ 시설 아동 양육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음.
- ◆ 경제적 어려움은 모든 가정 외 보호시설 유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남, 시설 운영비 및 양육비에 관한 재정적인 지원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 공무원들의 현장 이해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정 외 보호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됨.

다.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발달 현황

■ 유아 내적 표상 검사(MSSB)를 통한 발달 특성

- ◆ MSSB(MacArthur Story-Stem Battery: MSSB,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를 실시하여 유아가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여부,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는지 여부, 어떤 수행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친사회적이거나 공격적인 주제로 말하는지 여부, 양육자에 대한 표상이

어떠한지 여부, 검사자에 대한 반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유아 내적 실행 모델에 관하여 측정하였음.

- ◆ 유아 내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 총 15명을 대상으로 이야기 완성과제(MSSB)를 진행하였음.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를 각각 6명, 3명, 6명으로 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 분석 결과,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은 ‘불안’ 수준, ‘회피/위축’ 수준, ‘비조절된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일반가정에 위탁된 일부 유아의 경우 양육자와 분리에 대한 불안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육자와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어서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분노 표출 행동은 없었음.

■ 아동보호시설의 양육자 면담을 통한 영유아 발달 특성

- ◆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들은 언어, 학습, 정서 등 다각적 측면에서 발달이 더딜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됨.
- ◆ 일반위탁 가정의 아동들 중, 수면 장애 및 분리불안을 겪는 아동이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아동보육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영유아 발달 특성

- ◆ 발달장애 및 문제행동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반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발달적 장애로 언어발달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양육시설에서 평균적으로 1.4명 정도의 영유아가 재활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가.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향

■ 가정과 같은 성장 환경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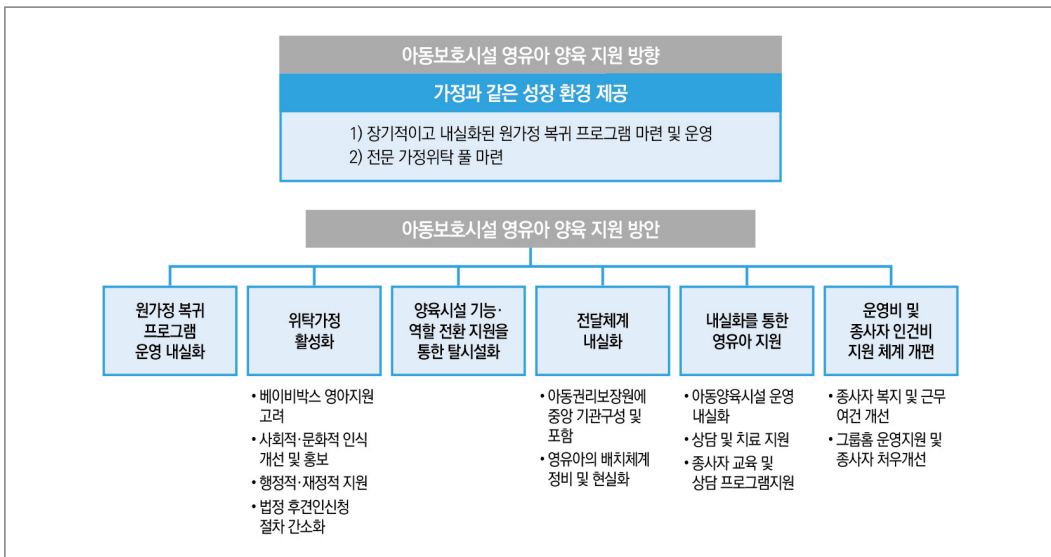
- ◆ 영유아들을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시설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아동보호시설이 나아가야할 전반적인 방향을 제안함.
 -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대원칙은 이러한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본 연구 결과, 일반가정에 위탁된 일부 유아의 경우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다소의 불안은 나타내긴 했지만,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애착 형성 뿐 아니라 해당 유아는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은 거의 표출하지 않았음.
 - 이상의 결과는 많지 않은 사례로 분석한 결과여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시 유아가 다른 보호시설에 비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면모를 엿볼 수 있었음.
- ◆ 원가정이 있는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마련 및 제공이 필요함.
 - 보호 필요 영유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가정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에서 원가정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가정 복귀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과 개입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가 원가정에 복귀해서 성장하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원가정의 문제가 극복되거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영유아가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 부모의 영유아 유기 등으로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유아를 전문적으로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위탁가정에서 이러한 영유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이러한 전문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위탁가정 풀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탁가정에

대한 홍보 및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상시 일정 수준의 위탁가정 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정기적인 관리 감독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위탁가정을 구성하여 신뢰하며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가정 풀을 구축해야 함.

나.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 하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에서 제시하였음.



[그림 1]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함.
 - ◆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원가정 복귀 우선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인력 배치 및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사례 관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베이비박스 유기 영아를 포함한 영아 양육 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위탁가정 배치가 활

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 베이비박스를 통하여 유기되는 영아가 가능한 위탁가정 등으로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시군구의 해당 부서에서 위탁가정 풀에 대한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 유기 영아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 대상의 국가적 수준에서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 ◆ 위탁가정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위탁가정 부모의 법정 후견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함.

■ 양육시설의 기능과 역할 전환을 통한 탈시설화

- ◆ 양육시설이 오랫동안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들을 포함한 아동 양육을 통하여 전수 되어 온 경험과 경륜을 완전히 부인하기 보다는 이들 시설이 지역사회의 복합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보호시설 전달체계의 내실화

- ◆ 최근 신설된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양육시설 중앙 기관 구성 및 포함하여야 함.
- ◆ 아동양육시설은 현재 보호필요 영유아가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하는 중앙기관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형태에서 배제 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조속한 해결 조치가 필요함.

■ 아동보호시설 내실화를 통한 영유아 지원

- ◆ 아동양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 영아의 발달권과 보육사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아동 대 보육사의 배치 기준에 따른 보육사 배치가 실현되어야 함.
 - 현재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육사가 몇 시간의 교육 등을 통하여 바로 양육 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육사 배치 전 현장 보조 실습 등을 포함하여 사전교육을 최소 일주일 정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함.
- ◆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함.

- ◆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종사자(부모) 교육,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 아동보호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체계 개편
 - ◆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체계 개편이 필요함.
 - ◆ 종사자 근무 여건 향상 및 복지를 위해서 보조 인력 배치 등의 추가 인력 배치 체계 마련이 필요함.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함.

4 기대효과

-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 실태 정보 제공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방안 제공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안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 돌봄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의 지원 방안 제안

I 참고 문헌 I

김형태·노혜련·김진석·이수천·조소연·이유진(2017). 아동복지시설 기능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서울기독교대학교.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2.19.).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1&CONT_SEQ=347826 (2019.3.11. 인출)

보건복지부(2018a). 2018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2018b). 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보건복지부(2018c).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2019.6.20. 인출)

보건복지부(2019a).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9b).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이정림·최정원·최윤경(2019). 돌봄취약계층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Emde, R. N.,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 *The MacArthur Story-Stem Battery*. Unpublished manual.

[법률]

아동복지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27호, 2019. 6. 11., 일부개정]